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31 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 구자근 • 박준태 • 김선교

최수진 · 김성원 · 인요한

배준영 • 이만희 • 정동만

박형수 · 유상범 · 박성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, 법인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한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중대 재해처벌법"이라 함)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, 현재까지는 사망사 고 감소 효과가 미미함.

법률규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'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'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며, 처벌요건인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모호해 안전인력을 확보한 대형사업장 조차 법 준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.

제5조 후단의 '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 ·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'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고, 제4조와 보 호대상(종사자)이 동일해 현장 혼란만 초래하고 있음. 또한 경영자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, 실제 법원은 사망원인을 제공한 법 위반 행위자에게는 징역 1년 미만, 주의감독(과실)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(대표이사)에게는 대부분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음.

한편,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법률조항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과도성에도 불구하고, 법률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추진되지 못했음.

이에, 동 법률의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며, 경영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함으로써,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사업의 안전보건 조직, 인력, 예산을 총괄·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마련함 (안 제4조).
- 다. 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삭제함(안 제5조).

라.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과 법인의 벌금 수준을 완화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
법률 제 호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가목 중 "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"을 "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, 인력,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제1호·제4호의 조치"를 "제1호의 조치, 제4호에 따른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및 조치"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"1년 이상"을 "7년 이하"로, "10억원 이하"를 "1억원 이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7년"을 "5년"으로, "1억원"을 "5천만원"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"50억원"을 "10억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10억원"을 "1억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정

아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~ 8. (생 략)
- 9. "경영책임자등"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 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

나. (생 략)

-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제1호·제4호의 조치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 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)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개

9. "경영책임자등"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

> -----<u>해</u>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, 인 력,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

임받은 사람

나. (현행과 같음)

-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① (현 행과 같음)
 - ② ----제1호의 조치. 제4호에 <u>따른 안전·보건</u> 관계 법령의 범위 및 조치-----. <삭 제>

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나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・운영・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제6조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 경 영책임자등의 처벌)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
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<u>7</u>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억원</u>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(생 략)

제7조(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) 제7조(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)

제6조(중대산업재해 사업	주와 경
영책임자등의 처벌) ①	
<u>7년 이하</u>	
<u>1억원 이하</u>	
,	
②	
	<u>5</u>
<u>년5</u> 천	
③ (현행과 같음)	
	1 \

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 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 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제6조제1항의 경우: <u>50억원</u> 이하의 벌금
- 2. 제6조제2항의 경우: <u>10억원</u> 이하의 벌금

1 <u>10억원</u>
2 <u>1억원</u>